



강경진 과장/공인회계사
조사2팀 회계제도파트

배당가능이익의 계산

매년 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오면 기업들은 지난 1년간 영업실적 등을 결산하고 배당을 통해 기업의 실적을 주주에게 배분하고자 한다. 이윤의 배당을 극대화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목적이고, 이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주주에게만 있으므로 배당은 주주총회의 중요한 의결사항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상법은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주주가 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상법 462조 제1항)를 규정하고 동 한도를 넘어서서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 이를 위법한 배당으로 보아 회사의 채권자에게 동 배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상법 462조 제2항)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상법의 계산 원칙은 기업회계기준과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어 기업회계기준을 재무제표의 작성원칙으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상법이 요구하는 배당가능이익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에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이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아래에서는 상법과 기업회계의 이익 개념을 살펴보고 기업들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에서 상법이 요구하는 배당가능이익을 도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산과 부채의 측정

(1) 상법

우리나라에서 배당가능이익산정에 대하여는 상법이 규정하고 있으며, 상장회사인 경우 증권거래법이 보완적 기능을 하고 있다. 우선 상법의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법 제462조에 의하면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우선 순자산액을 계산해야 하는 바, 순자산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인데 이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상법상 자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상법 제31조와 제45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 계산을 위한 상법상 자산의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법 제31조 자산평가의 원칙에서는 '유동자산은 취득가액·제작가액 또는 시가에 의한다. 그러나 시가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때에는 시가에 의

한다'라고 하여 저가주의에 의해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고정자산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으로부터 상당한 감가액을 공제한 가액에 의하되, 예측하지 못한 감손이 생긴 때에도 상당한 금액을 감액한다'고 하여 장기간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 및 감액손실을 계상하여 적정한 금액이 계상되도록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자산평가 원칙은 상법 제452조에 열거되어 있다. 즉, 금전채권은 채권금액에 의하되 채권을 채권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때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감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추심불능의 염려가 있는 채권은 그 예상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거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은 취득 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결산기전 1월의 평균가격이 취득가액보다 낮을 때에는 그 시기에 의한다. 거래상 기타의 필요로 장기간 보유할 목적에서 취득한 주식은 거래소의 시세의 유무를 불구하고 취득가액에 의하되 발행회사의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된 때에는 상당한 감액을 하도록 한다'라고 하여 저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사채에 대하여는 시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거래소의 시세있는 사채는 결산기전 1월의 평균가격에 의하고 시세없는 사채는 취득원가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는 다음과 같은 이연자산이 포함되어 있다. 즉 창업비를 위시하여 개업비, 신주발행비, 액면미달금액(주식할인발행차금), 사채차액(사채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 및 연구개발비 등 기간손익계산에 따른 원가배분원칙으로 이연비용이 자산으로 계상된다.

위에서 기술한 상법에 규정한 자산 평가방법과 배당에 관한 규정을 요약하면 일반적으로 이연자산을 포함한 취득원가 또는 저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이 계산되고 이러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배

당할 수 있는 이익이라 규정하고 있어 대차대조표 중심적 계상구조를 전제로 하는 이익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상법은 기본적으로 대차대조표에 있어서 자산의 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함으로써 손익계산에서는 수익을 실현주의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가주의와 실현이익은 상호표리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대차대조표에서 채고자산을 판매할 때까지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손익계산에서는 미실현이익을 계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보수주의적 실현이익관이 우리 상법의 특징이다.

이와 같이 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액 계산을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출발하고 있고, 순자산액은 취득원가에 따른 평가결과로 산출되는 것으로써 배당은 미실현이익을 제거한 실현이익만을 재원으로 충당됨으로써 자본충실의 원칙에 입각한 채권자보호정신을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기업회계

기업회계기준은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공정가치 평가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공정가치 회계는 자산·부채의 측정기준으로 공정가치(시가)를 적용함으로써 실현원칙을 버리고 발생주의를 기초로 하는 회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기에 따른 이익은 발생된(실현가능) 수익과 발생된 비용과의 차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익개념은 실현이익(Realized)과 미실현이익(Realizable)이 포함되어 포괄이익의 개념으로 도출된다.

따라서 공정가치 회계는 기간이익을 가지고 당해기간의 업적을 판단하는 지표로 보는 것으로 수익의 인식을 반드시 실현기준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발생기준으로 인식하여 장래의 수익 즉 장래의 유입될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정보로 보고있다. 때문에 기업이 투자한 노력(비용)과 그 노력에 수반되어 유입될 성과(수익)를 명확히 함으

로써 이익을 업적의 지표로 삼는 것이다.

즉, 시가로 평가된 자산은 장래 수익획득가능성(Service potential, 용역잠재력)이라 이해되어 장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자원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시가주의 회계는 자산·부채의 정보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채택되는 것이며 결코 처분가능한 이익이나 실현된 이익을 정확히 측정하지는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기업회계가 모든 자산·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며, 영업자산을 제외한 유가증권 등 공정한 시장이 형성된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시가회계가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영업자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원가·실현주의회계가 계속 적용되고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시가·발생주의회계가 이루어져 이 부분의 미실현 보유이익이 포함된 확대된 이익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산의 가액은 영업자산의 가치와 금융자산의 시가가 합산된 금액으로 나타나 결국 자산의 가치는 그것이 장래에 유입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계산된다.

(3) 상법과 기업회계 이익의 개념적 차이

상법과 기업회계 이익의 개념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본유지 개념을 우선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자본유지(capital maintenance)란 자본이 유지된 후, 또는 투자자본을 회수한 이후에 비로소 이익을 인식할 수 있다는 뜻으로 자본과 이익을 구분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자본유지개념은 창출된 수익이나 실현된 현금흐름을 자본의 회수부분(return of capital)과 자본에 대한 보상부분(return on capital, 이익)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후자의 인식에 앞서 전자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유지해야 할 자본을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측정코자 하는 이익개념과 그 크기도 달라지므로, 이익은 자본개념에 의존하는 종속변수가 된다. 이익은 결국 기업실체가 기초의 자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중에 소유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나타낼 수 있는

데, 이 개념은 자본유지접근법에 의한 이익측정의 기초를 이룬다.

자본유지이론에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자본에 대한 정의이다. 이익의 크기는 선택하는 자본유지개념에 의존하고, 자본의 정의는 여하에 따라 자산·부채 등에 대한 측정기준과 측정단위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일정시점의 자본은 순자산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고 순자산은 자산과 부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순자산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산·부채의 측정속성이 선택되어야 한다. 측정속성에는 역사적 원가와 현행원가 그리고 순실현가능가치와 현재가치 등이 있다.

이 경우 유지해야 할 자본은 재무자본(화폐자본)과 실물자본(실물생산력)으로 대별된다. 이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설계되는 회계시스템(자산평가와 이익측정시스템)이 달라지게 된다.

상법이 이익계산을 위해 어떤 자본유지개념을 도입하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전통적으로 상법은 채권자보호를 중시해왔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재무자본을 자본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재무자본유지개념에서는 기초와 동일한 화폐자본이 기말에도 유지되면 자본이 유지된 것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이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의 측정기준은 역사적 원가이다.

기업회계도 기본적으로는 재무자본유지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당수의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공정가치 회계를 적용하고 있어 이론적인 재무자본유지개념과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상법과 기업회계가 채택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측정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같은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거래의 측정결과 계상되는 순자산의 규모가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 자본유지접근법하의 이익 수준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순자산의 변동액 가운데 소유자원천의 자본거래(소유자에 의한 투자와 소유자에 대한 분배)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포괄이익으로 정의한 다음 포괄이

회계실무해설

익을 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당기순이익)와 자본조정(기타포괄손익 등)의 구성요소로 구분하게 되는 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원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상법에서는 순자산의 변동내역 중 미실현손익 부분이 계상될 여지가 없게 되는 반면, 기업회계에서는 공정가치 평가 결과에 따라 미실현자본이 순자산 내역에 포함되게 된다.

2. 미실현 손익의 배당가능이익 포함 여부

(1) 미실현손익

기업회계기준이 국제화됨에 따라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가 원가주의에서 시가주의로 전환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가치 회계는 취득원가주의회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를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어 최근 그 도입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시가주의를 채택하는 경우 자산의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는 미실현손익은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 외화환산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그리고 지분법평가손익 등이 있다. 그리고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미실현손익으로써 당기 이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자본조정)에 반영되어 있다.

(2) 미실현 손익의 배당재원 포함 여부

미실현 이익은 모두 실현되기 전에 미리 이익으로 계상될 뿐 아니라, 추후 자산의 처분 등으로 이익이 실현될 때에는 종전에 계상되었던 미실현평가이익과 실현된 이익과는 규모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평가이익이 당기순이익에 포함된다면 자산의 평가이익이 실현되어 현금이 사내로 유입이 되기도 전에 배당의 형태로 현금이 사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실현되지도 않은 단순한 평가이익이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므로 이것이 배당재원이 되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게 되면 회사자산을 유일한 담보로 하는 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히 침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확정되지도 않은 미실현이익을 배당의 형태로 사외로 유출시키는 경우 회사는 장래 채원의 부족으로 장기적 발전에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미실현 평가이익을 공제함으로써 자본의 충실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미실현손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미실현손실에는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외화환산손실, 재고자산감액손실, 대손충당금전입액,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고정자산감액손실, 파생상품평가손실, 그리고 지분법 평가손실 등이 있다. 이들 평가손실은 상법에서도 원가이하의 저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원가이상의 평가이익과는 다르다.

미실현손실도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재원에 포함(배당가능이익 계산시 가산 조정)시키게 되면 동 금액이 배당으로 사외 유출될 수 있어 회사의 담보자산이 줄게 되어 채권자이익을 침해할 수 있고 장래의 투자재원부족으로 회사의 장기 발전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미실현이익을 배당재원 계산시 차감해주는 것과는 달리 미실현손실은 순자산에서 차감된 상태로 두고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가산조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기업회계상 순자산으로부터 배당가능이익의 계산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법 제462조가 요구하는 대차대조표 접근방법을 준용하여 기업회계기준의 해 작성된 순자산액에서 출발하여 미실현이익과 자본 등 차감 항목을 조정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할 때 고려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자본조정 항목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대차대조표에 등장하는 자본조정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주식할인발행차금
- 배당건설이자
- 자기주식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또는 손실)
- 지분법자본변동
- 해외사업환산대 (또는 해외사업환산차)
- 주식매수선택권

상기 자본조정 항목 들은 순자산에 가산 혹은 차감 표시 한다는 측면에서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내역을 살펴보면 미실현보유이익에 해당되어 동 보유손익이 처분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전까지 대차대조표를 경유(by-pass)하기 위해 기록된 임시 항목과 원칙적으로 자본의 차감 혹은 가산 조정항목이지만 권리의 확정 시점 전까지 자본내 본 계정으로의 대체시점까지 임시로 기록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거 기업회계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자본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서 21호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가 시행되면서 전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후자는 '자본조정'이라는 명칭으로 구분표시 하도록 비판바 있다.

상기 항목 중 주식할인발행차금이나 배당건설이자, 자기주식, 주식매수선택권 등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상법에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 제도가 상법에서 규정된 제도이자 동시에 상법과 기업회계 모두 자본의 구성항목으로 보는 것에 차이가 없다 할 것이므로 배당가능이익의 계산시 순자산에 가산 혹은 차감된 기업회계의 계산내용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

이 타당하다.

그러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지분법자본변동 등의 항목은 상법의 원가주의를 벗어나 공정가치 회계의 적용에 따른 보유손익에 해당하므로 동 제원은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기업회계상의 순자산에 가감 조정(차감되어 있는 항목은 가산, 가산되어 있는 항목은 차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보수적인 관점에서 자본에서 차감되는 상태로 계상되어 있는 보유손실 부분은 가산조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는 앞서 밝힌 바와 같다.

(2)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어 있는 미실현손익

공정가치평가 등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비단 기타포괄손익의 형태로 대차대조표에 직행한 항목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에 직접 반영되는 형태로 발생하기도 한다.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 지분법평가손익 등이 그 대표적인 형태로서 이들 미실현손익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과는 달리 대차대조표를 경유하지 않고 당기순이익에 직접 반영된다.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기타포괄손익의 경우에는 계상된 금액 총액이 해당 자산(부채)로부터 발생한 미실현손익의 누계금액이 되어 배당가능이익의 계산시 가산 조정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으나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미실현손익은 결산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므로 결산시말 현재 이익잉여금에서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미실현손익 총액을 구분해 내야하는 문제가 따른다.

즉, 당기결산에서 시가로 평가한 경우에는 당기 손익 계산상 평가이익으로 나타남으로 미실현된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지만 전기 이전에 시가로 평가하여 전기 이익잉여금으로 합산된 미실현이익의 경우는 파악이 용이하지는 않다. 때문에 관련 자산(부채)명세에서 취득시부터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평가해온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나 처분시에는 현재의 장부가액과의 차액만 당기손익으로 처리되며 문제는 이때에 과거 미실현평가

이익으로 누적계산된 금액은 전기이익잉여금에 포함되어 미실현이익누계액으로 관리되어야 할 부분이 처분시 일시에 실현이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는 재무제표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관리 기술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미실현이익의 관리를 위한 대조계정을 적절히 사용하여 전기이익잉여금에 포함된 미실현이익을 적시에 배당가능한 실현이익으로 전환하는 조정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미실현보유손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익금불산입)는 배당한도액 계산시 미실현이익 전부를 차감하면 될 것이고,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배당한도액 계산시 미실현이익 전부를 차감하게 된다면 미실현이익에 대해 부담한 법인세비용만큼 이중 차감하게 되는 것이므로 동액만큼은 순액으로 차감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

(3) 이익준비금과 기타법정적립금의 배당가능이익 포함여부

상법 제462조에 의하면 배당가능한도액에 이익준비금 누적액과 당기중 적립되는 이익준비금을 제외시키고 있으며 상법 제460조에 의하면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은 자본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 보호차원에서 배당을 통한 부당한 부의 사외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상법 이외의 기타 법령에 의해 그 용도가 제한되어진 적립금(재평가적립금 등)은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포함될 수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상법 제462조를 살펴보면 순자산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자본준비금과 기업회계상 이익잉여금 중 이익준비금에 한정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기타법정적립금이 배당한도액에 포함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해당법에서는 당해 적립금을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 목적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비록 상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보호라는 상법의 기본 원칙을 고려할 때, 이익준비금과 마찬가지로 상법 제462조의 배당가능한도액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어

최근에 발표된 상법개정 시안에 따르면 순자산에서 출발하여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는 기본구조는 현행과 차이가 없지만 동 순자산 안에 미실현이익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은 여전히 배당가능이익 계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과 기업회계는 그 본연의 목적이 다르므로 배당가능이익의 계산을 위해 양자의 계산원칙을 통일시키지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업회계의 순자산에서 미실현이익을 구분해 내는 실무적인 가이드가 제시됨으로써 기업들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